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06
----------	-------

발의연월일 : 2022. 12. 13.
발의자 : 한무경 · 권명호 · 김승수
김영선 · 노용호 · 양금희
엄태영 · 윤한홍 · 이양수
임이자 · 홍문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품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의 내용량 기준 및 표시방법 준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음.

한편 정부 주도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량관리 촉진을 위하여 2007년 9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존의 정량표시 의무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적합성선언 사업자가 지속 감소하여 2022년 11월 기준 4개 사업자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하여 2020년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및 감사원에서 실시한 산업인증제도 실태 감사에서 폐지가 결정되었음.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일선 집행 현장에서 업무상 혼동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지방세외수입 징수 수단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도록 관계 법률 정비를 권고하였음.

이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 제6호, 제61조제1항제6호, 제63조제1항제6호·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66조제4항, 제67조제13호·제14호, 제70조제3호, 제72조제16호, 제7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제18호 삭제, 제49조, 제55조제1항·제4항,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76조제2항제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을 “교정이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를 “제18조 또는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 · 제3항”으로,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을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899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 제16호를 삭제한다.

제73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76조 제2항 제7호 중 “제22조 제4항 및 제48조 제2항”을 “제22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 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기적합성 선언 관련 규정(별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자기적합성선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3조(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u> ① 정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정량표시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한다)받아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계속하여 제1항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44조제1항의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제44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량표시 오차의 적합성확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적합성확인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적
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
항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를 적합성확인기
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적합성확인 요원, 정량검사
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
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
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적합성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기적합성선언 관련 신청서류

2. 자기적합성 확인서

제46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삭 제>

<삭 제>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적합성확인 업무를 한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 적합성 확인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 적합성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②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① 적합성확인기관은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

<삭 제>

<삭 제>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경우
3.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제43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표시제거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

<p><u>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 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한다.</u></p> <p>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 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 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u>교정 이력</u>, <u>적합성 확인현황</u>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u>6. 적합성확인기관의 장</u></p> <p>7. (생 략)</p> <p>제5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u>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u>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 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 ③ (생 략)</p>	<p>제49조(보고) ----- ----- ----- ----- ----- ----- <u>교정 이력</u>----- ----- -----.</p> <p>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현행과 같음)</p> <p>제55조(과징금) ① ----- -----<u>제18조 또는 제28조</u>----- -----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 ----- ----- ----- ----- ----- <u>국</u> <u>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u> <u>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u> <u>관한 법률」 -----.</u></p>
<p>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p>	<p>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p>	<p>① ----- ----- ----- ----- ----- ----- -----.</p>
<p>1. ~ 5. (생 략) 6. <u>적합성확인을 받은 상품 및</u> <u>적합성사업자 현황</u></p>	<p>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7. (생 략)</p>	<p>7. (현행과 같음)</p>
<p>② · ③ (생 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3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p>	<p>제63조(지위승계) ① ----- ----- ----- ----- ----- ----- -----.</p>

<p>•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적합성사업자</u></p>	<p><u><삭제></u></p>
<p><u>7. 적합성확인기관의 장</u></p>	<p><u><삭제></u></p>
<p>(2) ~ (5) (생략)</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66조(청문) ① -----</p>
<p>1. ~ 3. (생략)</p>	
<p><u>4.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u></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5.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 · 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의 거부</u></p>	<p>5. <u>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 · 제3항</u>----- -----<u>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u>-----</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u>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큐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u></p>	<p><u><삭제></u></p>

<p><u>문을 하여야 한다.</u></p> <p>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1. ~ 12. (생 략)</p> <p><u>13. 제4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확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u></p> <p><u>14.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u></p> <p>법률 제1899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p>제70조(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 2. (생 략)</p> <p><u>3. 제44조에 따라 적합성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적합성확인 기관의 임직원</u></p> <p>4. · 5. (생 략)</p> <p>제72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p>	<p>제67조(수수료)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p>법률 제1899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p>제70조(별 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72조(별 칙) ----- ----- -----</p>
--	---

<p>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p>	<p>----- -----.</p>
<p>1. ~ 15. (생 략)</p>	<p>1. ~ 15. (현행과 같음)</p>
<p><u>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u></p>	<p><u><삭 제></u></p>
<p>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p>	<p>제73조(벌칙) ----- ----- ----- ----- -----.</p>
<p>1. ~ 6. (생 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u></p>	<p><u><삭 제></u></p>
<p>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p>
<p>1. ~ 6. (생 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제22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u></p>	<p>7. <u>제22조제4항</u>----- ----- -----</p>
<p>8. ~ 17. (생 략)</p>	<p>8. ~ 17. (현행과 같음)</p>
<p><u>18. 제45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u></p>	<p><u><삭 제></u></p>

19. ~ 21. (생략)

③ (생략)

19. ~ 2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